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8. 25 선고 2019가합101533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등의 소]

전 문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안

담당변호사 안혜정

피고C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주

변론 종결2021. 7. 7.

판결 선고2021. 8. 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B에게 200,000,000원, 원고 A에게 31,009,12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A에게, 주위적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인도하고, 예비적으로, 4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2017. 9.경부터 망인과 동거를 시작하였고, 망인이 2018. 9.경 담도암 진단을 받았을 때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 곁에서 간병을 하였다.

다. 망인은 2018. 12. 7.부터 같은 해 12. 28.까지는 E병원에 입원하여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하며 치료를 받았고, 2018. 12. 28.부터는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9. 1. 5.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친동생인 G은 2018. 12. 28. 망인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7,800,000원을 이체하여 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E병원 계좌로 27,060,742원을 송금하였다.

마. 또한 G은 2019. 1. 2. 망인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0,000,000원을, 망인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31,009,121원을 각 인출하여 위 각 돈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이하에서 위 각 돈을 합한 231,009,121원을 '이 사건 현금'이라 한다).

바. 한편, 망인은 2018. 12. 7. H회사 I차량((차량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4,66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8. 12. 27.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가, 2019. 1. 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5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18. 12.경부터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는 이러한 상태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현금 및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갑 제8호증 참조)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갑 제8호증 참조)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 A에게, 주위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차량의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일 경우에는 위 차량 가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이 사건 현금과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한 사실, 망인은 말기 암환자로서 2018. 12. 7.경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하며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을 제1, 2, 5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현금 및 이 사건 차량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금원 지급 청구 및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량 인도 청구(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고, 차량 인도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차량 인도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 청구(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1) 피고는 2017. 9.경부터 망인과 동거하면서 망인의 사망시까지 곁에서 간병하는 등 가족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망인이 2018. 12. 28. E병원에서 퇴원할 때에는 망인의 계좌에서 27,800,000원을 이체 받은 다음 27,080,742원을 망인의 병원비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망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지(을 제1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19. 1.~3.

아파트 主(G)

入住 2/3

전세 60,000,000 ~ 70,000,000

피고(C) 이름으로 전세

유증 3년 이내 등기 이전

자동차 현재-내 차 이용→기회 봐서 I으로 대체

월 1,500,000원 적금 년 18,000,000 적립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립

2018. 11. 1.

D

2) 망인의 동생으로서 망인의 유언 내용을 집행한 G은 원고들이 피고를 횡령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피고에게 생활비로 20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하였는데, 그 자리에 있던 J 세무사가 200,000,000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30,000,000원 정도 나올 것이라고 하여 피고에게 230,000,000원을 지급했고, 50,000,000원은 유언 전에 망인이 계약한 차량(I)을 피고에게 주라고 하여 그 차량 대금으로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망인의 유언에 참여하였던 J와 K도 위 G의 진술과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8호증의 1, 2)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H회사 창원지점 직원도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은 딸이 사용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7호증)를 제출하였다.

3) 피고는 위와 같은 진술대로 2019. 6. 30. 증여세 34,920,000원을 납부하기도 하였다(을 제5호증).

4) 위와 같은 피고와 망인과의 관계, 피고의 역할, 위와 같은 메모의 내용,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고려해보면, 망인이 피고에게 그동안의 피고의 노력에 대한 대가 및 망인의 사망 이후 홀로 남게 될 피고의 생활을 위하여 이 사건 현금을 교부해주고, 이 사건 차량의 소유 명의를 이전해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5) 원고들이 피고를 횡령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는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받기도 하였다(을 제9호증).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영욱

판사정수미

판사손주완